

##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

제정 2013. 9. 30 조례 제2489호  
일부개정 2017. 5. 18 조례 제2819호(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양시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안양시 홍보대사(이하 “홍보대사”라 한다)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안양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·외 활동
2.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
3.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
4.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
5. 그 밖에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위촉 등)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
2. 시의 경제적,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·외 인사나 단체
3.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

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품위유지)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,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촉 해제)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

2.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
3.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
4.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

제6조(운영)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기획관이 주관하되,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기획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. 다만,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·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. <개정 2017. 5. 18>

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③ 홍보기획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하고 선정조서 및 위촉관계 서류를 관리한다. <개정 2017. 5. 18>

제7조(예우 및 보상)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,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임기로 한다.

부칙 <2017. 5. 18 조례 제2819호,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⑭ 까지 생략

⑮ 「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홍보실에서”를 “홍보기획관이”로 하고, “홍보실”을 “홍보기획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홍보실”을 “홍보기획관”으로 한다.

⑯ 부터 ⑰ 까지 생략

[별지 제1호서식]

안양시 홍보대사 위촉(위촉해제)대장

위촉 기간	성명 (남,여)	주 소	직 업	연 락 처	위촉사유	위촉 부서	위 촉 해제일	위촉해제 사 유